

대법원 2023. 2. 2 선고 2022다282296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2. 2 선고 2022다28229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30 선고 2021나38460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

담당변호사 홍명호, 신보섭, 임웅찬, 정래리나, 신상화, 장준형,

양성국, 서소현, 김근요, 오리진, 봉성완

피고, 피상고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

담당변호사 신희복, 김희라

판 결 선 고 2023. 2. 2.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30. 선고 2021나3846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안철상, 대법관 노정희, 주 심 대법관 이흥구, 대법관 오석준